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p> <p>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u>요율</u>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p> <p>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u>지급기준</u>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p> <p>③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별첨></p> <p>2.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p> <p>3. ~ 6. (생략)</p>	<p>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p> <p>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시에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별첨></p> <p>2. ~ 5. (현행과 동일)</p>	<p>회사의 고지의무 영업및업무규정 제3-7조 제5항 반영</p> <p>호 이동</p>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p>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 ③ (생략) ④ 판매회사가 전항의 저축금을 이용하는 경우 저축자에게 저축금이용료를 지급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 할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9조(매매내역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록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을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p>	회사의 고지의무 영업 및 업무 규정 제3-7조 제5항 반영 다른 표준약관과 일치

제9조 ~ 제22조 (생략)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에 대하여 저축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0조 ~ 제23조 (현행과 동일)

조 이동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0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u>요율</u> 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u>또한 회사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u>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u>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u>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u>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u>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의 고지의무 영업및업무규정 제3-7조 제5항 반영
<별첨>	<별첨>	
2.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삭 제)	
3. ~ 4. (생략)	2. ~ 3. (현행과 동일)	호 이동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9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p>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p> <p>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p> <p>③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별첨 1></p> <p>8. 제19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p> <p>9. ~ 15. (생략)</p>	제19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p>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별첨 1></p> <p>(삭 제)</p> <p>8. ~ 14. (현행과 동일)</p>	회사의 고지의무 영업및업무규정 제3-7조 제5항 반영 호 이동